

[해당 학교/교구 이름, 로마 가톨릭 뉴왁대교구]
내부 고발인에 관한 방침

I. 개요

[해당 학교/교구 이름, 또는 로마 가톨릭 뉴왁대교구]은/는 내부 고발을 한 고용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 법규사항을 준수합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교구 이름, 또는 로마 가톨릭 뉴왁대교구] 은/는 뉴저지의 양심적 고용인 보호법 (N.J.S.A. 34:19-1, et seq.)에 의거하여 본 '내부 고발인에 관한 방침'을 정합니다.

II. 목적

내부 고발인에 관한 방침의 목적은 본 방침에서 정의(定義)하는 내부 고발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내부 고발인으로서 항의를 하는 고용인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제시하며, [해당 학교/교구 이름, 또는 로마 가톨릭 뉴왁대교구]이/가 내부 고발에 관여한 고용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공개적으로 내부 고발을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III. 내부 고발인 보호와 정의(定義)

뉴저지의 양심적 고용인 보호법에 의거하여 [해당 학교/교구 이름, 또는 로마 가톨릭 뉴왁대교구]은/는 다음과 같이 행동한 고용인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 A. 고용인이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하여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고용주(또는 사업 관계 상의 다른 고용주)의 행동, 방침, 관행 등에 대해 감독관이나 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 혹은 알리겠다고 경고하는 행위.

1. 개인이나 사업체 또는 정부를 상대로 한 기만과 허위진술이 되는 모든 위반을 포함하여 법률 위반행위 또는 법률에 따라 공포된 규칙과 규정의 위반. 또는 건강관리 면허 소지자 혹은 공인 자격자인 고용인이 부당하게 환자를 돌보는 일.
 2. 합리적 관점에서 볼 때 활동, 방침, 관행 등이 개인이나 사업체 또는 정부를 상대로 사취하는 것으로 여길 만한 사기나 형사범죄 행위.
- B. 고용주(또는 사업 관계상의 다른 고용주)의 법률 위반 또는 법에 따라 공포한 규정이나 규칙의 위반에 대해 공공기관이 조사할 때 정보를 제공하거나, 심리(審理)나 취조할 때 증언하는 행위. 이와 같은 위반 행위에는 개인이나 사업체 또는 정부를 상대로 속이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모든 위반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는 건강관리 면허 소지자 혹은 공인 자격자인 고용인의 환자 간호/치료 행위에 대해 공공기관이 조사를 할 때 정보를 제공하거나, 심리(審理)나 취조를 할 때 증언하는 행위.
- C.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여겨지는 행위, 방침, 관행 등에 대한 고용인의 참여 반대나 거절.
1. 개인이나 사업체 또는 정부를 상대로 한 기만과 허위진술을 하는 모든 위반을 포함한 법률 위반행위 또는 법률에 따라 공포된 규칙과 규정의 위반행위. 또는 건강관리 면허 소지자 혹은 공인 자격자인 고용인이 부당하게 환자를 돌보는 행위.
 2.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아 개인이나 사업체 또는 정부를 상대로 사취하는 것으로 여길 만하게 속이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나 방침, 관행 등을 포함한 사기나 형사범죄 행위.

3. 공중보건, 공공안전, 공공복지, 환경보호와 관련된 공공정책의 명백한 임무에 따르지 않는 행위.

IV. 공개 절차

- A. 본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고용인은 본인의 상급자나 지정된 내부 고발 접수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내부 고발 접수자의 연락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서면으로 하는 공개는 공개하는 문제가 어떤 성격의 문제인지, 어느 정도의 문제인지, 얼마나 긴급한 문제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 B. 고발을 한다는 보고를 하급자에게서 받은 상급자는 내부고발 담당자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 C. 비밀 조사가 곧바로 실시됩니다. 조사 결과로서 혐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V. 서면 통지가 필요한 특정 상황들

상급자나 내부 고발 담당자에게 먼저 보고 하지 않고, 또한 [해당 학교/교구 이름, 또는 로마 가톨릭 뉴약대교구]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결 기회를 주지 않고 고용인이 어떤 문제를 공공기관에 공개했다면, 그 고용인에게는 보복조치에 대한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긴급한 상황에서 고용인이 [해당 학교/교구 이름, 또는 로마 가톨릭 뉴약대교구]의 상급자 한 명 이상이 그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확신을 했거나 그 고용인이 공개로 인해 신체적 상해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합리적인 관점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자나 내부 고발 담당자에게 하는 서면보고 의무가 면책됩니다.

VI. 공지와 배포

[해당 학교/교구 이름, 또는 로마 가톨릭 뉴약대교구]은/는 본 방침을 웹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교수 편람이나 직원 편람이 있다면 본 방침을 편람에 게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학교/교구 이름, 또는 로마 가톨릭 뉴약대교구]은/는 내부 고발인 법에 의거한 고용인 보호, 고용인의 의무와 권리, 관련 제반 절차에 대한 공지를 명확하게 전시해야 하고, 일년에 한 번 서면 공지나 온라인 공지로 모든 고용인들에게 배포해야 하며, 기타 다른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뉴저지 내부 고발인 법에 의해 고용인들이 보호를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장에 의거하여 게시되고 배포된 각 공지들은 영어본과 스페인어본이 있어야 합니다. 공지에는 본 방침에 의거하여 [해당 학교/교구 이름, 또는 로마 가톨릭 뉴약대교구]에서 지정한 내부 고발 서면 접수 담당자의 성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일자]

#383059 v2